

의안 번호	제3572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월 31일 배강민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2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서비스 등의 확대로 이륜자동차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음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김포시민의 평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함.
- 나. 또한 소음·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되었고 반기별로 점검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,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해 김포시 이륜자동차의 소음점검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2조)
- 나. 시장 등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4조)
- 라.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(안 제5조)
- 마.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(안 제6조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등의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이용량이 급증하고,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, 이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및 교육·홍보, 지도·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한 사안임.
- 또한, 상위법령인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(’23. 6. 13. 시행) 개정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, 반기별 점검 실적을 중앙부처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
-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수시 점검·관리하고, 운행자의 준수사항을 상기시켜 소음 공해가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또한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,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# 【 관계 법령 】

#####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

**제2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·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운행차의 수시점검 등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.

1.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2.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
3.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,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[시행일: 2024. 6. 14.]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생략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8. 심사결과 : [원안가결](#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없음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